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55

2023년 12월 21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16. 김지향 의원 외 17명 공동발의

나. 회부일자 : 2023. 10. 23.

다. 상정일자 : 제321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 2023년 12월 21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은 징계 심사 전 의무적 절차이고 자문위 의견을 존중하도록 해 사실상 의결에 구속력이 있으나 서울특별시의회는 자문위 구성 시 민간위원 위촉이 어려운 경우,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시의원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위원회 중립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2023.7.28.).

○ 또한, 각급 공공기관 행동강령의 금품등의 수수금지 행위 기준과 관련하여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10만원→15만원, 설날·추석 20만원

→30만원) 및 물품 및 용역상품권을 선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

○ 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공정성 및 중립성이 강화되도록 자문위의 구성·운영 규정을 개선하고, 통일성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을 위해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정비함.

나.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 위원회 위원에서 공무원, 정당의 당원, 의원을 제외함(안 제22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정비(안 제24조)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개정(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10.26.~2023.10.30.

나) 예고결과 : 없음

2) 소관부서 의견조회 : 원안가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병수)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개정안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3.7.25. 국민권익위원회)[1]’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겸직하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을 개선하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 상향, 물품 및 용역 상품권 선물 허용 등 선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3.8.29.)사항 등을 반영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되었음.

2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22조, 안 제24조)

(1)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구성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조례 위임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국내외 활동의 승인,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등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기구로 운영되고 있음.

---

1)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의 내부규정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또한, 자문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89조 및 제90조[2] 등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 조례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도 같이 수행하고 있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현황>

구분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근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22조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지방자치법」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90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
기능	○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 의원의 국내외 활동 승인에 관한 사항 ○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 의장의 자문 ○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운영 실적	○ 1차('23.9.4.) : 국민권익위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 관련 조례 자문 ○ 2차('23.9.20.)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 관련 자문	○ 1차('23.5.3.) : 위촉식 및 운영방안 논의 ○ 2차('23.6.28.), 3차('23.7.19.) : 윤리특별위원회 자문 요청의 건
위원회 구성	- 위 원 : 9명(남 5, 여 4)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분 야 : 법조계 4명, 학계 2명, 언론계 2명, 시민단체 1명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3년('23. 4.24. ~)	

2) **제89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강령 조례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제9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 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각각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이하 "행동강령 조례"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겸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행동강령 조례 제2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서울시 공무원과 의원, 정당의 당원을 제외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서울시 공무원 또는 의원을 임명(위촉) 하여 총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기능과 권한의 확대에 따라 부패 발생 가능성이 증대됨에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미흡해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가 있었음.

○ 이에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강화되도록 자문위원회에서 시 소속 공무원, 의원, 정당의 당원을 제외하고 있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구성 및 임기) ① (생 략)	제22조(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② ---------- 학계·법조계·언론계 ---------- 윤리·행동강령---------- 공정성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③ ----------

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되지 못한다.	정당의 당원은 ----------.
1.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삭 제>
2. 의원	<삭 제>
3. 정당의 당원	<삭 제>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한다.	<삭 제>
1. 제2항에 따라 추천하는 위원이 없거나 추천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의장이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 위원이 없는 경우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은 징계 심사 전 의무적 절차이고, 사실상 의결에 구속력이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된다는 점에서 위원회 위원에서 시 공무원, 의원 등의 참여를 배제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함.

○ 다만,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위임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3]에서는 현행 규정과 같이 예외적으로 소속 공무원 등을 위원

3) **제22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4]도 있으므로 각각의 위원회를 별도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안 제24조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당사자가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면 자문위원회 의결로 위원을 제척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하고 있음.

---

1. ~5.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3.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야 한다.
4.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을 허용하여야 한다.
5.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의견23-0223, 법제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생 략)	제2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이 제21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③ ---------- ---------- ---------- ---------- ---------- -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 이는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미흡해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개선안을 반영한 것임.

○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문은 다수의 위원이 참여하게 되어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소재가 확실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의사결정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장치를 둘 필요성과 위원회의 중립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둔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적절한 입법 조치임.

3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별표 1)

○ 개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2023.8.29.)에 따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10만원→15만원, 설날·추석 20만원→30만원)하고, ‘물품 및 용역상품권’등으로 선물 범위를 확대하고자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별표1)’를 개정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제11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가. ~ 라. <신 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제11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신 설>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 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 관련 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바.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지난 8월 문화·예술·체육 산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영화관람권 등 상품권을 추가하는 한편,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고,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그 가액의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음.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통일성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운영을 위해 법령 개정사항을 각급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에 조속히 반영할 것을 협조 요청(2023.8.)하였고, 개정안은 이를 반영한 것임.

○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신속하게 자치법규에 반영하는 것은 체계정당성의 원칙[5]을 준수해 법적 안정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입법조치임.

4 종합 의견

○ 개정안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을 개선하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 상향, 물품 및 용역 상품권 선물 허용 등 선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것임.

○ 이는 정부 방침과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적시에 반영해 법체계 및 정책의 안정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 조치로 판단됨.

---

5)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적의원 12명, 출석위원 10명, 찬성 10명)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향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355

발 의 년 월 일 : 2023년 10월 16일
발 의 자 : 김지향, 강석주, 김길영, 김원중, 김재진, 김종길, 김혜영, 도문열, 박 석, 박영한, 박춘선, 박환희, 소영철, 유정인, 이민석, 이종태, 홍국표, 황철규 의원(18명)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은 징계 심사 전 의무적 절차이고 자문위 의견을 존중하도록 해 사실상 의결에 구속력이 있으나 서울특별시의회는 자문위 구성 시 민간위원 위촉이 어려운 경우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시의원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위원회 중립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2023.7.28.)

○ 또한, 각급 공공기관 행동강령의 금품등의 수수금지 행위기준과 관련하여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10만원→15만원, 설날 · 추석 20만원→30만원) 및 물품 및 용역상품권을 선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됨.

○ 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공정성 및 중립성이 강화되도록 자문위의 구성 · 운영 규정을 개선하고, 통일성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을 위해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 위원회 위원에서 공무원, 정당의 당원, 의원을 제외함(안 제22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정비(안 제24조)

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개정(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를 “학계·법조계·언론계”로, “행동강령”을 “윤리·행동강령”으로,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를 “공정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을 “정당의 당원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민간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위원의 제척·회피)”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를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로 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등의 가액 범위
(제11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 · 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 ·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 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 · 단서 및 제3호 본문 · 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 · 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 · 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 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바.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 관련 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구성 및 임기) ① (생 략)	제22조(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② ---------- 학계·법조계·언론계 ---------- 윤리·행동강령 ---------- 공정성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 정당의 당원은 ---------- -.
1.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삭 제>
2. 의원	<삭 제>
3. 정당의 당원	<삭 제>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한다.	<삭 제>
1. 제2항에 따라 추천하는 위원이 없거나 추천위원만으로 자문위원	

회를 구성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의장이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 위원이 없는 경우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⑤ 위원---------- ---------- ---------- ---------- ---------- ----------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생략)	제2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이 제21조 각 호에 따른 업	③ ----------

무를 수행할 때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 ---------- ---------- ---------- ----------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별표 1]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제11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가. ~ 라. <신 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신 설>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제11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 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

	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 · 온누리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 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 관련 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바.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 관련 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문서번호	2023101600000014

비 대 상 사 유 서

요 청 인 : 김지향 의원	담 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박지영 주무관
접 수 일 : 2023.10.16.	
회 신 일 : 2023.10.16.	내용문의 : 02-2180-795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목 차

1. 판단 근거

2.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제22조(구성 및 임기) 및 제24조(위원의 제척·회피)를 변경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별표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박지영
	☏ 02-2180-7952
	e-mail : 7magic7@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